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4. 20 선고 2021가단11660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박정혁, 문옥, 양선화, 유병일

피 고 B (개명 전 성명 :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범준

변 론 종 결 2023. 4. 6.

판 결 선 고 2023. 4.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D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21. 5. 28.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21. 6. 1. 접수 제4268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구상금 채권

1) 원고는 2017. 9. 4. D과 사이에, 보험가입금액 12,000,000원, 보험가입기간 2017. 9. 4.부터 2022. 9. 4.까지로 정하여 D이 주식회사 E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D에 대하여 2019. 5. 5. 보증사고(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절차 개시)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주식회사 E의 청구에 따라 2019. 10. 1. 보험금 9,378,161원을 지급하였다.

3) 2021. 11. 9. 기준 원고의 D에 대한 구상금 채권액은 합계 11,203,715원이다(=지급 보험금 9,378,161원 + 2019. 10. 2.부터 2021. 11. 9.까지의 지연손해금 1,757,439원 + 채권보전비용 등 미수금 68,115원).

나. 이 사건 증여계약의 체결 등

1) 피고와 D은 2014. 7. 9. 김해시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씩을 취득하였다. D은 2021. 4.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자신 소유의 1/2 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계약을 체결하고, 2021. 4. 2. 위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D은 2002. 9. 1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D은 2021. 5.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1. 6. 1.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와 D의 협의이혼

- 1) 피고는 2007. 12. 5. D과 혼인신고를 마쳤고 둘 사이에 2009년생인 미성년 자녀가 1명 있다.
- 2) 피고와 D은 2020. 11. 5.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면서 재산분할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약정하였다.

제1조(지급의 범위)

- ① D은 2021. 3.부터 2030. 2.까지 매월 25일 피고에게 2,000,000원을 양육비조로 지급한다.
- ② D은 자신과 피고의 공동명의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피고에게 조건 없이 위자료조로 양도한다.
- ③ 현재 D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위자료조로 피고에게 양도한다. 단 소유권이전(가등기말소 등)에 따른 비용은 D이 부담한다.
- ④ D 명의의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을 본 약정서 작성과 동시에 피고에게 양도하고 명의를 이전한다.

제2조(자녀 친권 및 양육권)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친권은 D이, 양육권은 피고가 각 가진다.

- 3) 피고와 D은 2021. 2. 9.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5호증의 1, 2, 을가 제1호증,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D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체결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위 증여계약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도한 것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D에게 원물반환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D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위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이 사건 증여계약의 성격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D이 피고와 사이에 2020. 11. 5.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면서 자신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양도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인 2021. 2. 9. D과 피고가 협의이혼 신고를 마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D과 피고 사이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재산분할의 상당성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생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며,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351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D와 피고가 협의이혼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비롯한 D의 적극재산 전부를 피고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갑 제6호증, 제7호증, 제9호증의 1, 2, 제10호증의 1, 2,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김해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H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에서 본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다한 재산분할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① D와 피고는 2007. 12. 5. 혼인신고를 한 이래 13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고, 피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육아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수령하는 등 소득활동을 해왔다.
- ② 피고는 2009년생 자녀의 양육을 전담하기로 하면서 D로부터 매월 2,000,000원의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실제로 D로부터 양육비가 지급된 적은 없다.
- ③ 이 사건 아파트 중 D 소유의 1/2 지분이 피고에게 이전될 당시 이미 위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를 D으로 한 채권자 I 주식회사, 채권자 신용보증기금 명의의 근저당권이 수차에 걸쳐 설정되어 있었고 그 채권최고액의 합계금액은 194,400,000원에 이르렀다.
- ④ 2021. 12. 2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J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위 경매절차에 따라 배당할 금액 165,128,038원은 모두 근저당권자 내지 교부권자에게 배당되었고 소유자인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은 전혀 없다.
- ⑤ 현행 부부재산제도는 부부별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부부 각자의 채무는 각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인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들의 피담보채무와 D이 K카드, 신용보증기금, L, M 등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⑥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므565 판결,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토지는 D이 혼인 전 상속받은 것이기는 하나 혼인기간 중 피고가 꾸준히 경제활동을 하면서 그 유지에 협력하거나 감소를 방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⑦ 이 사건 토지는 공시지가로 33,362,500원에 불과하여 그 재산적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1989. 4. 12.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경북 의성군 N 답 466㎡와 O 답 1,663㎡ 중 각 2/10 지분 역시 공시지가로 4,939,280원에 불과하다.

⑧ D과 피고가 협의이혼에 이르게 된 원인에 D의 유책사유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

결국 원고의 청구는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아

별지